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요약 안내

- ① 2021.6.23.부터 교사자격 신규취득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범죄경력, 마약류중독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② 결격사유 확인 방법
 - (성범죄경력) 졸업 전 교사자격검정 신청 시, 대학(원)에서 일괄 조회됩니다.
 - (마약류 중독여부) 건강관리협회 또는 법무부지정 의료기관(사전문의 필요)에서 개인별 검진 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대학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Q&A

Q1. 교사자격취득 신청자들은 마약류 중독 검진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A1. 마약류 중독여부는 의료기관의 검진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여부 확인이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검진 절차를 간소화하고, 비용을 절감하고자 교육부에서는 '건강관리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2년마다 1회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 시, 신청자에 한하여 마약류 진단검사를 추가 실시 후 검사결과통보서를 교사자격취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2. 국가건강검진과 연계할 경우, 마약류 검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A2. 교사자격취득(전) 시기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국가건강검진 시, 교사자격 취득용 마약류 검사를 포함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별도의 검사결과서를 발급받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교육부가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와 협약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타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 문의가 필요합니다.
** 검사 방법은 <마약류 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를 참고*

Q3. 질병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의 경우, 마약류 사용검사에 양성 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A3. 치료 목적의 약물은 마약류 사용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나, 이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증명되면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사 자격의 신뢰도를 높여
예비 선생님들과 학생을 지키고
교육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

〈예비교사용〉



법률 개정에 따라, 2021년 6월 23일부터 마약류 중독자 및 성범죄자의 교사자격취득이 제한되었습니다.



법률은 왜 개정되었나요?

- 2020년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으로, 교직사회에도 더욱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2020년 12월**, 국회는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였습니다.
- **국회에서의 입법취지**는 ‘성장기에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의 자격 취득을 더욱 엄격히 하려는 것’입니다.

법을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유아교육법」제22조의2,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2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 정교사(1·2급), 전문상담·보건·영양·사서교사(1·2급), 실기교사,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 교육대학,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교직과정 이수자, 교육대학원 교사자격취득자, 방통대/산업대/전문대 및 실기교사자격취득자 모두 적용됩니다.

성범죄경력 확인 관련 안내



기관 일괄조회, 개인별 제출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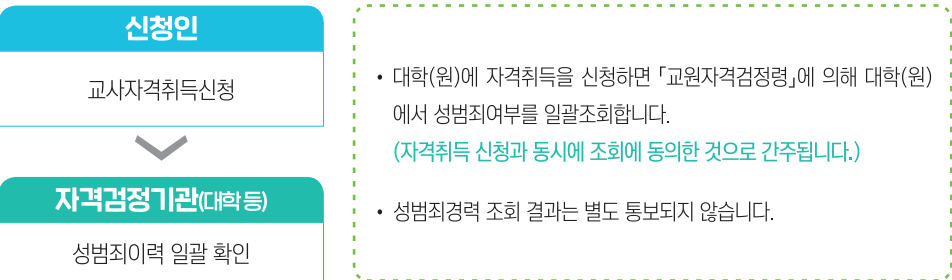
- 교사자격취득이 가능한 모든 유형의 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교사자격취득을 신청하면 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됩니다.

- ① 교육대학, 대학의 초등교육과
- ② 사범대학, 대학의 교육과
- ③ 교직과정 운영학과
- ④ 교육대학원 양성과정
- ⑤ 전문대, 산업대, 방통대 교육과 및 교직과정
- ⑥ 기타(준교사, 실기교사 등) 양성과정

※ 해당 대학(원)의 의뢰로 성범죄경력 여부가 일괄 조회되며, 교사자격검정원서 제출과 동시에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비동의시 자격 취득 불가)

- 다음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교사자격증을 신규로 취득하지 않는 경우
(예시 : 이미 취득한 교사자격증을 재발급하시는 경우)

- 성범죄경력 확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시행 이후 성범죄경력 뿐 아니라, 법률 시행 전 성범죄경력도 조회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회 비용 : 별도 비용은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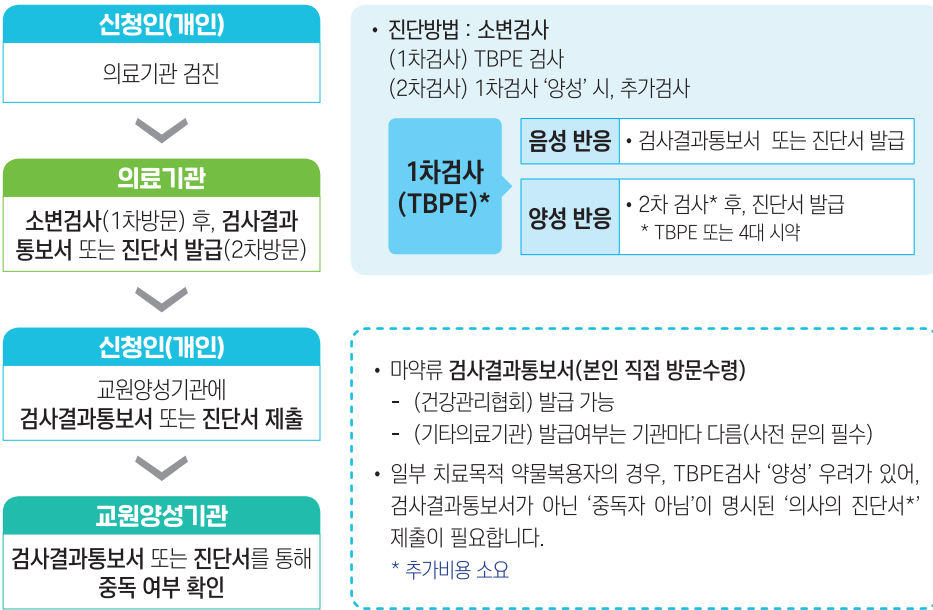


마약류중독여부 판별 관련 안내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의사 진단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신청자가 의료기관을 통해 개별 진단 후, 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교육청, 대학의 별도안내가 있을 경우, 해당안내가 우선입니다.
 - ※ (발급소요일) 병원에 따라 소요기간(약 3~15일 소요)이 다릅니다.



※ 검사 시, 기저질환으로 인한 장기 복용약물을 제외한 기타 약물은 7일 이상 복용 중단을 권고합니다.
※ 감기약 등의 경우도 검사민감도가 높아 양성반응이 가능하므로, 양성반응 시 재검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단 기관(개인별 선택 가능) 및 비용

- **건강관리협회(메디체크) 전국지부 : 교육부 협약체결기관**
 - 국가건강검진(2년마다 1회) 시, 해당 검사를 포함하고, 교사자격취득 시 별도 검사결과통보서를 활용 가능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병행 5,000원 / 비병행 단독검사 6,000원
- **일반의료기관 : hikorea.go.kr(법무부지정 의료기관*)에 사전문의가 필요합니다.**

7,000원 ~ 25,000원

* 취업비자 입국 외국인 대상 검진기관

- 1차 검사 양성 반응(일부 감기약 등 가능) 시, 4대 시약검사를 통한 2차 검사가 가능합니다. (TBPE검사보다 많은 비용 소요)

[참고] 한국건강관리협회 검진 방법

구분	사전예약명	검사결과통보서 수령
대학, 대학원 등	• 교사자격취득용 검사-대학* * 지역명이나 대학명이 아닌 “대학”으로 예약 ※ 대학명 또는 지역명으로 예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바랍니다.	• 개별 방문수령 필요